

# 법제화 추진되는 '출판자의 권리'

'일본複寫權센터' 설립 구체화…5월에 정식 발족키로

최근 일본은 복사기기의 보급에 따라 출판물의 카피(copy) 공害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일본출판계에서는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출판자의 권리'를 법제화하여 저작물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저작권 집중처리기구를 설립하려는 운동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웃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역시 불법 복사·복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출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카피公害' 방지 위해 출판계 총력전

'카피 공해'란 저작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개인적인 카피의 영역을 넘어 출판물의 복사·복제가 마구잡이로 행해짐으로써 그 결과 출판물의 판매가 저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서적출판협회(書協)는 진작부터 저작권의 일부개정을 문화청에 요청함과 아울러 카피공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문화청에 대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청한 것은 지난 85년부터의 일이다. 書協은 그해 4월1일자 「저작권법 일부개정 요망서」에서, "발행된 출판물의 版面을 이용한 복사·복제 등에 의해 출판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로부터 출판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판자에게 새로이 版面權을 인정"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청의 저작권제도 심의회는 이미 지난 66년 현행 저작권법 심의과정에서 "발행된 출판물의 組版面에 관계되는 발행자의 보호를 위해, 이들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 복사기기의 보급에 따라

### '카피 공해'가 심각하다.

### 일본 출판계는 문화청의 지원을 받아

### 저작물의 카피이용자로부터

### 일괄해서 저작권료를 징수·관리할

### 저작권 집중처리기구의 설립을

### 맹렬히 추진하고 있다.

고려할 만하다"는 답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76년 문화청은 복사기 등의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의와 그에 따라 초래되는 권리자의 피해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의 집중적 처리방식'을 제언했으며, 이어 84년에는 관계 권리자에 의한 저작권 집중처리기구의 설립을 제언했다.

### 1년간 3천6백만권, 349억원 피해 입어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書協은 일본잡지 협회·자연과학서협회 등과 협력, 87년 9월 한달 동안에 걸쳐 기업과 대학 등에서의 출판물의 복사이용 실태와 그로 인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복사된 출판물의 책수는 1년간에 3천 682만 5천권, 금액으로는 349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해 10월17일에는 '일본복사권센터'의 설립발기인회가 열려, 금년 5월에 동센터를 발족시키기로 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인 10월21일 문화청 저작권

심의회 제8소위원회는 출판자의 저작권에 대해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 복사권센터'는 서적·잡지 등 저작물의 카피 이용자로부터 일괄하여 저작권료를 징수·관리하는 저작권 집중처리기구로서 "저작자·출판자의 권리와 저작물 및 출판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며 저작권사상의 보급에 힘쓰므로써 학술·문화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모든 출판물에 출판자의 권리를 인정, 私的 이용 등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카피할 경우에는 출판자의 허가를 얻거나 일정한 요금을 집중처리기구에 지불하며, 그 보호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등 '출판자의 권리'를 창설키로 했다.

### 경제계선 법제화 '반대'의견도

그런데 동년 12월이 되어 경제단체연합회 등 경제계로부터 "출판사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등으로부터의 근거불명의 복사료 징수를 인정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표명되었다. 이에 때맞추어 경제광보센터가 만들어 돌린 팜플렛은 ①문화청의 의도는 지적 생산물의 유통원활화와 사회 전체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일 뿐더러 ②출판자를 위해 기업 등으로부터 복사료 징수를 기도하는 새로운 권리의 창설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③경제계는 자사가 작성한 자료의 복사가 대부분인 기업 등의 실상을 무시한 복사료 징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본문예가협회도 출판자의 법적 보호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書協 등 4개 단체에서는 이같은 반대의견에 대해 설득활동을 펴는 한편 저작권법의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보류되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書協 등 4개 단체는 "출판문화의 유지·발전을 위해 '출판자의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팜플렛을 제작,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 팜플렛은, 특히 앞서의 경제계측 팜플레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 법률이란 그물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라고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이란 私的 사용이나 도서관의 복사 서비스 등, 일정한 조건 아래 정해진 권리의 제한규정에 근거한 이용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새로운 출판자의 권리에도準用토록 되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같이 '출판자의 권리'에 대하여는 출판자총회와 경제계에서 견해가 대립되어 있지만, 書協 등 출판 4개 단체는 꾸준히 계몽활동을 펴면서 '출판사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9일에는 저작권집중처리기구인 '일본복사권센터'의 설립발기인 간사회 제1차 회의가 열림으로써 동센터의 설립운동은 바야흐로 구체화하고 있다.



표지디자인 · 본문편집 · 제작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32-5호

279-1323

## 번역전문

일본어(고전·현대어)  
영어  
중국어

\*신속·정확하게 원문에 충실하게 한  
국인의 감각에 맞게 제2의 창작 정  
신으로 번역함.  
\*문학작품·전문서적 등 어떠한 번역  
물도 다 취급함

세계외국어학원 번역부  
☎ 553 9015~6

네 모

## 출판 미술 전문

교과서, 참고서 컷·삽화  
아동 삽화물·카다로그  
표지 디자인·팜플렛

☎ 313-4723 이상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71-1

★ 남아현 상가 216호 ★

## 「출판저널」보관용 바인더 실비제작 배포합니다.

「출판저널」의 판형이 특수하여  
보관하기가 까다롭다는 독자 여러  
분의 의견에 따라, 1년치(24호분)를  
합침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제작설비  
2,000원과 등기우송료 1,500원, 합  
계 3,500원을 우편소액환으로 주문  
하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사로 오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